

p. 16 정답수정

기 존	정답 04 ④ 05 ①
수 정	정답 04 ②,④ 05 ①

p. 27 내용수정

기 존	④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고(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)와는 구별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·제출하게 한 경우에는,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(대판 2001.1.19. 2000다51919·51926).
수 정	④ "해고"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
p. 67 내용수정

기 존	③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가능하다(근기법 제59조).
수 정	③ 법 개정으로 '광고업'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으며, 또한 특례업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한다.

p. 68-1 정답수정

기 존	정답 03 ① 04 ①
수 정	정답 03 ② 04 ①

p. 68-2 내용수정

기 존	③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부에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연소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.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부, 연소자 모두에게 적용이 불가하다.
수 정	③④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부에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연소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.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부, 연소자 모두에게 적용이 불가하다.

p. 84-1 정답수정

기 존	정답 03 ①
수 정	정답 03 ①, ③

p. 84-2 내용수정

기 존	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,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,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(근기법 제69조).
수 정	③ 법 개정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며,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, 1주 5시간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.

p. 140 정답수정

기 존	정답 53 ① 54 ③
수 정	정답 53 ①, ③ 54 ③

p. 176-1 정답수정

기 존	정답 15 ② 16 ①
수 정	정답 15 정답없음 16 ①

p. 176-2 내용수정

기 존	② 노조법 제34조 제2항
수 정	②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단순히 일방이 요청할 수는 없다.